「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1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2. 2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3. 4.

다. 상정일자: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2.3.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마포구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9건의 인용 법조문을 일괄 개정.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

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규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여 개정함이 원칙이나, 개정의 목적이나 사유가 유사한 경우에는 법규 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개정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또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다수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칙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의결시에는 1건으로 처리됨.

○ 다만, 일괄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소관 조례까지 개정하게 되어 자칫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번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정대상 조례의 공통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20건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함은 물론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일괄개정의 사유 역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